

의안번호	2221297
의 퇴 인	민홍철의원
회 답 일	2026. 9. 28.
추 계 번호	26C4703

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바둑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억 5,000만원(연평균 7,0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실태조사 (안 제6조의2 신설)	70	70	70	70	70	350	7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의2(실태조사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바둑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6조의3(예산지원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, 바둑단체, 그 밖에 바둑분야의 사업자가 바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11조(연구활동 등 지원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·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	재량규정
		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, 지원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의무규정
4	안 제15조(조세에 관한 특례)	구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대회의 유지·확대와 바둑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후원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의2(실태조사)	○	- 대한바둑협회 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2	안 제6조의3(예산지원)	×	- 바둑단체, 바둑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규정이나 현시점에서 지원대상 및 규모를 추정할 수 없음
3	안 제11조(연구활동 등 지원)	×	-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규정이나 현시점에서 지원대상 및 규모를 추정할 수 없음
4	안 제15조(조세에 관한 특례)	×	-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조세 관련 특례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현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조세수입 감소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법률안 심사·의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바둑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바둑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은 대한바둑협회가 2023년 9월 발주한 “바둑에 관한 국민인식 및 이용실태조사 용역”을 위한 사업예산금액인 7,000만원이 매년 발생하고, 추계 기간 내 금액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

- ☐ 추계결과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바둑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

[표 2] 바둑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실태조사 (안 제6조의2 신설)	70	70	70	70	70	3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☐ 없음

V. 작성자

- 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문지은

- 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assembly.go.kr